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 토 보 고

### I. 주요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 II. 검토의견

안 제2조제4항은 공무원의 경우 2024. 3. 19.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 대상이 되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 것을 고려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간 재해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임.

안 제40조제1항제3호는 양육비 채권에 있어서는 수급권자가 보유한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sup>1)</sup>는 연금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40조제1항제3호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원인으로 연금인 급여채권의 전액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2025. 8. 14.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규정<sup>2)</sup>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압류금액의 제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음.

그리고 위와 같이 안 제40조제1항제3호의 압류 허용 규정은 개정된

---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률 제21026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두지 않아 공무원 재해와 관련한 급여의 경우 양육비 채권을 원인으로 한 압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는 재해 관련 급여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였음.

| 현행                                                                                                     | 개정안                                                                                                                                | 수정의견                                                                                                                                                                                                                    |
|--------------------------------------------------------------------------------------------------------|------------------------------------------------------------------------------------------------------------------------------------|-------------------------------------------------------------------------------------------------------------------------------------------------------------------------------------------------------------------------|
|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br>1. 2. (생략)<br><u>&lt;신설&gt;</u> |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br>-----<br>-----<br>-----<br>-----.<br>1. 2. (현행과 같음)<br>3. <u>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u> |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br>-----<br>-----<br>-----<br>-----.<br>1. 2. (현행과 같음)<br>3. <u>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u>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한편, 안 부칙 제3조는 양육비 채권이 “성립”한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양육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도 그 실현을 위해 연금인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유사 입법례<sup>3)</sup>를 참고하여 개정안은 양육비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에 한정하도록 교육부와 협의하였음.

| 개 정 안                                                                                                                                             | 수 정 의 건                                                                                                                               |
|---------------------------------------------------------------------------------------------------------------------------------------------------|---------------------------------------------------------------------------------------------------------------------------------------|
| 부칙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u>양육비 채권이 성립한 경우(이 법 시행일 현재 수급권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u>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 당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u> 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은 정)

3) 법률 제21026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